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2024485 판결 [전환사채 매매대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20244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3722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치일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진수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372236 판결

주문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C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담보물을 제공한 것일 뿐, 자신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행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위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 C 역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B의 매도청구권 행사 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들이 위 담보물을 매각하게 되면 피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훈, 판사 송혜정, 판사 김대현